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62 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 인요한 · 성일종 · 구자근

박준태 • 조승환 • 최수진

우재준 • 이종배 • 김민전

권영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, 유아숲체험원,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(이하 "산림교육체험시설"이라 함)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법에는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임.

그러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 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3(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감면) ①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, 유아숲체험원,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(이하 이 조에서 "산림교육체험시설"이라 한다)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 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 - 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3.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 <u>신 설&gt;</u>	재 정 안  제44조의3(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감면) ①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, 유 아숲체험원,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(이하 이 조에서 "산림교육체험시설"이 라 한다)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해당 시 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면 제반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 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	<u>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</u>

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

- 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3.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 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